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704

발의연월일: 2022. 5. 24.

발 의 자:한무경·김상훈·김승수

김영식 • 박 진 • 엄태영

이헌승 • 정우택 • 정운천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여성 68.9%가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 (2021년 조사기준 144만 8천여 명)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나 동일한 업종의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과 동시에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삭제하여 재고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 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100분의 4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기업"을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100분의 4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1.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 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	절 여성	의 근로	본소득세
가 원	l천징수도	위었던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	-로 한	정한다)
한 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결혼·약	임신·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의	사유료	트 퇴즈]하였을
것			

- 2. (생략)
- 3. <u>해당 기업</u>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 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② ~ ⑥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을
	<u>체결하는 기업</u>

② ~ ⑥ (현행과 같음)